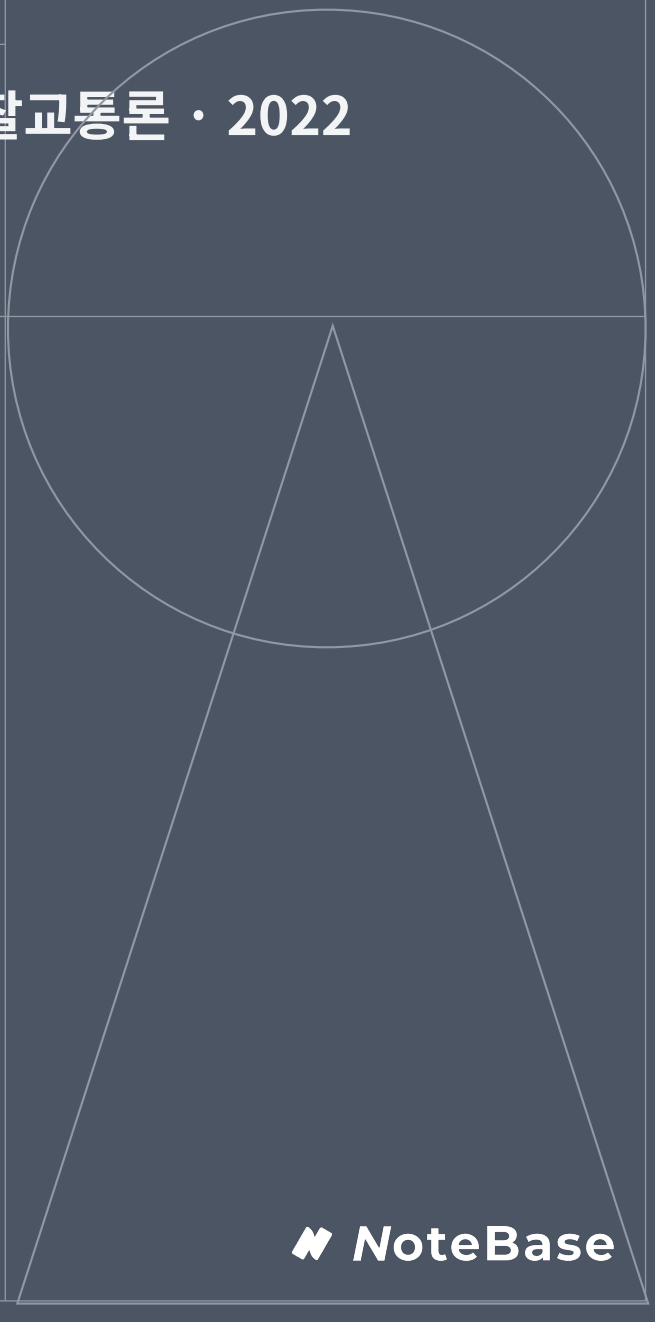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2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2

문 1.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속한다.
㉤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4번

㉠

도로의 파손·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경찰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차마·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NoteBase

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 통행·횡단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공무원은 안전한 통행·횡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ㄷ

경찰공무원은 운행 중인 차가 정비불량차라고 인정되면 **먼저 정지시킨 뒤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①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ㄹ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은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ㅁ

주차규정을 위반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 장소에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문 2.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자동차의 도로 통행속도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고속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③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수 및 최고속도에 관계없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이다.

④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 경찰청장이나 시 · 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 · 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NoteBase

③

편도 1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높여 지정·고시한 구간은 최고속도가 달라도 **최저속도는 모두 매시 50킬로미터**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특수자동차 · 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④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다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표지의 속도**를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 · 안개 ·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별표 6 1.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NoteBase

문 3.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 속도 규정 및 차체 중량을 충족하면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금지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승차정원 1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② ㉡㉢㉣
③ ㉡㉣㉤
④ 모두 적절함

정답 3번

㉠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속도 기준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이며, 차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종류에 포함된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하며, 안전확인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통행 대상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6.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NoteBase

⭘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운전자 1명**이므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NoteBase

문 4.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전교차로는 저속으로 운영되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신호교차로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② 네갈래 평면교차로에서는 교차상충이 16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반면, 기본유형의 회전교차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화물차 턱(Truck Apron)은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을 말한다.

정답 1번

①

회전교차로는 신호설비가 필요 없어 신호교차로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유턴이 쉬워 **인접 도로와 지역으로의 접근에도 유리하다**.

②

네갈래 평면교차로의 **교차상충은 16개**이다. 기본유형의 회전교차로에서는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므로 **교차상충이 없고 합류·분류상충만 발생**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모두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 우회전 · 횡단 · 유턴 · 서행 ·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화물차 턱은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나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부분**으로, 대형차의 회전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NoteBase

문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측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반의사불벌 특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이다. **치사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NoteBase

③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NoteBase

문 6.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 및 개념 등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산점수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②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③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④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정답 4번

①

누산점수는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등에 따른 상계치를 뺀 점수**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 8. 2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NoteBase

②

처분벌점은 앞으로 정지처분에 사용할 점수이므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 8. 2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③

벌점은 **처분기준을 적용할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 8. 2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NoteBase

④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6개월은 소멸기간이 아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 8. 2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NoteBase

문 7. 최근에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상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단,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3번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일방통행 도로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NoteBase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우선도로의 차마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NoteBase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승용자동차의 범칙금은 **12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 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7.11>

https://drive.google.com/file/d/17k_njBm6OU3fDuDvC7C2PjIdbxuf1zk_/view?usp=drivesdk

NoteBase

문 8. 「도로교통법」상 진로양보 및 양보운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① ㉠: 올라가는, ㉡: 넓은, ㉢: 우측, ㉣: 좌회전, ㉤: 우회전
② ㉠: 내려가는, ㉡: 좁은, ㉢: 좌측, ㉣: 좌회전, ㉤: 우회전
③ ㉠: 올라가는, ㉡: 넓은, ㉢: 우측, ㉣: 우회전, ㉤: 좌회전
④ ㉠: 내려가는, ㉡: 좁은, ㉢: 좌측, ㉣: 우회전, ㉤: 좌회전

정답 1번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NoteBase

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도로가 자신이 통행하는 도로보다 **넓으면 서행**하여야 하며,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ㄷ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ㄹ, 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9. 「교통사고조사규칙」 상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 현장에 나가 현장을 조사하고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②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도 사고 경위 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적극 반영

③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④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정답 2번

①

실황조사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는 수사서류이므로 **사고 상황을 객관적이고 간명하게** 기록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②

실황조사서에는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을 배제**한다.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

③

사고 관계인과 입회인의 진술·설명은 **사고 전후 상황을 명확히 하는 사실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기록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 · 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NoteBase

④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같은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로 작성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NoteBase

문 10.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4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여 통과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NoteBase

㉠

어린이통학버스의 교육 대상인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이다.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 군 · 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NoteBase

ㄷ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도, 승하차 표시 점멸등이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일시정지 없이 서행만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ㄹ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튜닝 승인을 받아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 · 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이나 보호자 동승을 맡겨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2020.5.26>

NoteBase

문 11. 보행자신호기 설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치한다.

②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한다.

③ 차도의 폭이 16미터 미만인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차도 내에 남을 때가 많은 경우에 설치한다.

④ 보행등의 점멸 속도는 분당 50~60회로 한다.

정답 3번

①

차량신호만으로 보행자의 통행권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신호기를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o7hbEUiw7dGJ6LpuHzc6SuOgV_cv0vfH/view?usp=drivesdk

②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초과**하면 보행자신호기를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AukoJF1O2-JYvp_Orj57mp9Gk6AKuFQq/view?usp=drivesdk

③

차량신호가 바뀌어도 보행자가 차도에 남을 때가 많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차도의 폭이 **16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cxapB4RIB9t_lexkaF1BNScVcxxBk0_/view?usp=drivesdk

④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 속도는 **켜졌다 꺼지는 한 주기를 분당 50~60회 반복**한다는 뜻이다. 주기는 60초를 점멸 횟수로 나눈 값이므로 **약 1~1.2초에 한 번** 점멸한다.

NoteBase

문 12.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②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③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④ 전문학원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

정답 4번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는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 · 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②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의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은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 · 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 · 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NoteBase

③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업무**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 · 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④

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아니라, **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⑥ 경찰청장은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신호등이 갖추어야 할 성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등으로 운영될 것
②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③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정답 1번

①

신호등의 법정 성능은 **등화의 밝기, 빛의 발산각도, 외부 빛에 의한 표시 방해 방지**이다. 교통량 변화에 따른 자동 점멸 운용은 필수 성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신호등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③

신호등은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밝기**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NoteBase

④

신호등의 표시는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NoteBase

문 14.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용어 및 사고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사고 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신속한 합의에 있다.

③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④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정답 2번

①

대형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 이상인 사고**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형사고"란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것을 말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교통사고 조사는 부상자 구호·사고확대 방지·교통소통 회복과 함께 **정확한 원인조사와 형사책임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4. 형사책임의 규명 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③

요마크는 급핸들 등으로 **바퀴가 회전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져 생기는 타이어 마모흔적**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NoteBase

④

추돌은 **2대 이상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NoteBase

문 1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의 평가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 위험지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피해 사고 건수 및 사망자·중상자 수

② 사고 원인 :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

③ 사고 유형 : 차대 사람, 차대 자전거 사고 건수

④ 보행 조건 : 도로의 폭, 보도의 폭

정답 3, 4번

①

교통사고 위험지수는 **인명피해 사고 건수와 사망자·중상자 수**로 평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사고를 우선 고려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Ic2hC3LCoYKiREGbEVdmaz1bv1BweGu7/view?usp=drivesdk

②

사고 원인은 **속도위반·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로 평가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3ojmCcoGF1_apWaH9jk2rstauac5ifU/view?usp=drivesdk

③

사고 유형의 평가 대상은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량 단독 사고 건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중 **차 대 사람 사고 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차 대 사람과 차 대 자전거로 제시한 분류는 현행 평가방법과 다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_YDZFUzH9J4DUSkQv2SBwDN1U5rvXVXx/view?usp=drivesdk

④

보행 조건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여부**로 평가한다. 도로 폭은 도로 및 교통 여건의 위험도 평가사항이며, 보도의 폭은 보행 조건의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QTHDsn_3IIJEEjK-O25kZoD39_KsTKO/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노면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기본규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차로 폭에 따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

② 노면색깔유도선표시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으로 표시한다.

③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촉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의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바.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 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노면색깔유도선표시의 색채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NoteBase

④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하면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가. 표시
(2) 자전거횡단표시를 횡단보도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NoteBase

문 17. 「도로교통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②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특혜에 관한 사항

④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정답 3번

①

75세 이상인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의 교통안전교육에는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②

75세 이상인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의 교통안전교육에는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법정 교육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관련 법령 이해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특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④

75세 이상인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의 교통안전교육에는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18. 「도로법」상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도로의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2번

①

도로관리청은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NoteBase

③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면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NoteBase

문 19. 「도로교통법」상 다음의 사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운전면허 재취득에 필요한 결격 기간이 옳은 것은?

운전자 A(만 40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는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B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단, 운전자 A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01%)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정답 3번

③

혈중알코올농도 0.01%는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에 미달**한다. 이러한 인적피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021.1.12, 2021.10.19, 2022.1.11, 2023.10.24, 2024.12.3, 2025.4.1>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NoteBase

④

혈중알코올농도 0.01%는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에 미달**한다. 이러한 인적피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021.1.12, 2021.10.19, 2022.1.11, 2023.10.24, 2024.12.3, 2025.4.1>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NoteBase

문 20. 고속도로 외 시·군의 도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도로를 파거나 뚫으려 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③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④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덤프트럭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정답 1번

①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시행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의 도로공사 신고와 구별된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NoteBase

③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통행 금지·제한을 위한 사전 신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④

덤프트럭 등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사전 신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NoteBase